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2개 유형의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금지청구권 인정 -
- 기술유용 시 물건 등의 폐기 청구 가능 -

하도급관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인의 폭넓은 금지청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2025. 8.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을 통하여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그 시사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폭넓은 금지청구권 도입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12개 유형의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해당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부당특약 설정(제3조의4), ② 부당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③ 구매강제(제5조), ④ 부당위탁취소(제8조), ⑤ 부당반품(제10조), ⑥ 대금감액(제11조), ⑦ 대금 부당결제청구(제12조), ⑧ 경제적이익 부당요구(제12조의2), ⑨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⑩ 부당대물변제(제17조), ⑪ 부당경영간섭(제18조), ⑫ 보복조치 금지(제19조)

나.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에 대한 물건의 폐기 등 규정

기술유용행위의 경우 금지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미 생산된 물건이나 설비를 통해 계속되는 피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요구(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또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제4항)를 하였거나 해당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그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하도급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 시사점

이번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 또는 초기에 중단하도록 하여, 행정상의 제재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앞서 신속한 권리구제 및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사업자의 경우 금지청구가 가능한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 또는 피해에 대한 '우려'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금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술자료 요구·유용에 따른 물건 폐기·설비 제거의 경우,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또는 유용 가능성에 따른 손해 발생의 우려를 수급사업자가 증명하는 것만으로 해당 기술자료와 관련한 물건이 폐기되거나 설비가 제거되어 중대한 사업상의 차질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사전 점검 등을 통해 각 불공정행위의 유형에 따른 법 위반의 여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미리 시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 Areas

공정거래

하도급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유용

사인 금지청구

Contact

윤정근 변호사

02-528-5179

jkyun@yulchon.com

강성일 변호사

02-528-5920

sikang@yulchon.com

박성범 변호사

02-528-5840

sbpark@yulchon.com

정세훈 외국변호사

02-528-5923

cschung@yulchon.com

황윤환 변호사

02-528-6464

yhhwang@yulchon.com

정성무 변호사

02-528-5724

smjung@yulchon.com

한승혁 변호사

02-528-5633

shhan@yulchon.com

김규현 변호사

02-528-5860

khkim@yulchon.com

류송 변호사

02-528-6473

sryu@yulchon.com

이승재 변호사

02-528-5590

sjlee@yulchon.com

최유미 변호사

02-528-6442

ymchoi@yulchon.com

이우열 변호사

02-528-5906

wylee@yulchon.com

박양진 변호사

02-528-6472

yjpark@yulchon.com

이충민 변호사

02-528-5750

cmlee@yulchon.com

김건웅 변호사

02-528-5963

kwkim@yulchon.com